

창원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11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양동혁, 이성현, 임선영, 홍승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정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3. 2.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315,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31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은행, E은행, F(‘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위 세 곳의 금융기관을 통칭할 경우 ‘D은행 등’이라 한다)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나. 원고회사는 2003. 10. 24. D은행 등으로부터 위 카드대금채권 등(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은행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6. 7. “C는 원고회사에 이 사건 양수채권 원금 22,939,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17%, 2007. 9.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17차전12994), 그 지급명령은 2017.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의 부친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2. 27. 사망하였는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었다.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된 2001. 12. 3.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22. 6. 22.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리금 14,054,760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6. 29. 말소되었다.

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C, C의 누나인 피고, C의 형인 I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3. 2. 2. 피고를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2. 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회사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을 갖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은 2023. 2. 2.이다. 원고회사가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얻은 날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3. 10. 24.이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2023. 8. 25.자 회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3. 9. 27.자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의 2023. 8. 30.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C를 상대로 한 과세당국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C는 이 사건 주택 중 상속지분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양수채권 상당액의 채무를 비롯하여 C의 채무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분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스스로의 상속분(1/3)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회사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은 물론이고 2019. 12. 5. 사망한 모친 J을 부양하며 그들에게 소요되는 병원비, 생활비의 거의 전부를 부담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C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는, 피상속인인 망인이 아니라 그의 처 J의 병원비, 약제비 결제내역에 불과하여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에 있어 이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의 악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원고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는 2006년경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C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받으려던 과정에서 C와 연락이 닿았는데, 부모님을 봉양해 온 피고의 기여를 알게 된 C가 미안한 마음을 표출하며 피고를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응했던 것이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 상당액의 채무는 물론이고 그 외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언급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항변을 하고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J의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I가 2022. 8. 2. 법원에 C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6년 이래로 C의 주민등록이 2011. 5. 11. 신고거주불명등록이 된 바 있으나, 약 9개월 뒤인 2012. 2. 15. 재등록된 이후 계속하여 등록된 상태가 유지된 사실, 피고와 I가 신청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2023. 6. 8. 기각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116)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과 을 제8호증의 12, 1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2)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속개시일(2022. 2. 27.) 후인 2022. 6. 22.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인 14,054,760원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여 2022. 6. 29.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비록 실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날짜가 그 후인 2023. 2. 2.이긴 하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민법 제1015조), 피고에 의한 위 14,054,760원의 변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피고, C, I가 1/3 지분씩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 C, I는 모두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관련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모두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던 사람들이었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으로 인하여 C의 1/3 지분이 책임재산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는 한 채무자가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중 일부 부동산이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C의 1/3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위 법리에 따라 4,684,920원(= 위 14,054,760원 x 1/3)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양수채권의 원금만 해도 22,939,612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주택 중 C 지분인 1/3 지분의 가액이 위 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제1회 변론조서), 결국 이 사건에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은 이 사건 양수채권의 원리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택 중 C의 지분인 1/3 지분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 4,684,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315,080원[= (6,000만 원 x 1/3) - 4,684,920원]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위 15,315,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회사에 원상회복으로 위 15,31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별지